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1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49)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케이지포장건설(주)(이종춘)

나. 전화번호 : 042-826-9533

2. 명칭 : 노면의 적설·결빙·슬러시에 대한 복합대응과 당일시공 및 교통개방이 가능한 스마트 발열도로 조성기술

####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요지>

기존기술의 한계인 용설에 국한된 기능과 고가의 시공비 및 공사 소요기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열포장 전용 RH 전열선, 전열선 병렬 매립시공 기술, 도막형 열차단재, 축열포장재를 자체 개발하고, 이를 복합노면센서, 지능형 MCU 모듈 스마트 제어, 사물인터넷(IoT) 관제기술과 융합하여, 노면으로의 열전달 효율 향상, 적설·결빙·슬러시 등 동절기 노면의 상태 이상을 자동으로 감지 및 제거하고, 공사개시 1일 이내 교통개방까지 가능한 스마트 발열포장 시공기술

<범위>

자체 개발한 RH 전열선, 도막형 열차단재, 축열포장재를 복합노면센서, MCU 제어, 사물인터넷(IoT) 관제기술과 융합 시공하여, 전자동 원격제어로 동절기 노면의 적설·결빙·슬러시 제거가 가능하고, 공사당일 시공완료 및 교통개방까지 가능한 스마트 발열포장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